

#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2
----------	-----

제출년월일 : 1995. . . . .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제안이유

-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과 업무추진의 일원화로 자치단체의 능률성을 높이고 행정추진을 간소화하여 주민편의를 도모 하고자함

## 주요골자

- '96. 2월 조직개편 및 직제규칙개정에 따라 사무관장부서 정비
- 도지사권한사무중 시장.군수.출장소장이 처리함이 주민편의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사무 위임
- 관계법개정으로 업무폐지 및 위임조항 정비

## 근거법령 (따로붙임)

- 지방자치법 제95조
-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 폐기물관리법 제26조
- 어선법 제35조
- 도·소매업진흥법 제6조

##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권한위임사무중 분야별 내역의 업무관장 부서에서  
 “지방과”를 “자치행정과”로,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부녀복지과”를 “여성복지과”로, “보건과”를 “보건행정과”로,  
 “원예유통과”를 “농업유통과”로, “산림녹지과”를 “산림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과”로 한다.

(별표1) 권한위임사무중 사회진흥과소관 및 청소년과 소관을  
 삭제한다.

(별표1) 권한위임사무중 환경관리과 소관을 다음과 같이 하고,  
 환경지도과 소관 제19호 다음에 제20호를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분 야 별	일 련 번 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환경관리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소특정시설의 설치신고의 수리</li> </ul>	수질환경보전법 제 36조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음진동배출시설 규제에 대한 다음 사항 (대기 또는 수질분야 1~2종 사업 장제의 다만, 대기 1~2종 사업장 중 아스콘제조시설 및 일반보일러 시설에 국한될 경우 위임범위에 포함)</li> </ul>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환경관리과		가. 배출시설 설치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수리 나. 배출시설 설치기간 연장신청의 수리 다. 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 인정 라. 사업자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의 수리 마. 공동방지시설 운영의 중단 또는 폐쇄신고 수리 바. 가동개시의 신고 및 가동개시일 변경신고의 수리, 가동상태 점검 사. 허가 또는 변경허가 부합여부 확인 및 조치명령 아. 환경관리인의 임명 및 개입신고의 수리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4항 동법 제10조 동법 제10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동법 제13조 제1항, 제4항 동법 제13조 제3항 동법 제21조
	3	○ 토양정밀조사와 관련한 다음 사항 가. 토양정밀 조사의 실시 나.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다. 타인 토지에의 출입 및 장애물의 변경 제거 라. 손실보상 마. 오염원인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제4항 동법 제7조 동법 제8조 동법 제9조 동법 제15조
	4	○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련 다음 사항 가. 토양오염 유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동법 제11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환경지도과	5	나. 토양오염 유발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시정 등 조치명령 및 사용 중지 명령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다.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자에 대한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 출입과 시설 및 비치자료의 검사	동법 제13조	
		가. 대책계획 수립 시행	동법 제18조 제1항	
		나. 오염토양 개선사업 실시명령, 사업승인 및 변경승인, 사업실시	동법 제19조 제1항, 제2항, 제3항	
		다. 토지이용 및 시설의 설치 제한	동법 제20조	
		라.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및 시설의 철거명령	동법 제21조 제3항	
		6	가. 명령불이행에 대한 대집행	동법 제24조
		7	가.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처리	동법 제32조
		20	가. 폐기물관리 관련 다음사항	
		가.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변경허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나.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영업정지명령	동법 제28조	
		다. 과징금의 부과·징수	동법 제29조	
		라.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동법 제31조 제3항	
		마.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동법 제32조	
바. 휴업·폐업 등의 신고 수리	동법 제42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환경지도과		사. 폐기물 재생처리 신고 수리 아. 청문 자.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44조의2 동법 제57조 동법 제63조 제3항

(별표1) 권한위임사무중 보건행정과 소관 제73호 다음에 제7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보건행정과	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립의 결핵진료소, 요양소의 설치 허가 및 변경허가</li> </ul>	결핵예방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16조

(별표1) 권한위임사무중 수질관리과 소관 사무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수질관리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수와 관련한 다음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한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의 조사 등</li> <li>나.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li> </ul> </li> </ul>	지하수법 제5조 제2항 내지 제4항,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3조, 제4조 동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6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다.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시정명령 및 조치명령	동법 제8조 제1항
		라.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폐쇄명령 및 당사자 의견진술 기회부여	동법 제8조 제2항, 동법 제20조
		마. 지하수개발·이용지역의 원상복구 또는 시설 철거명령 및 조치명령, 명령불이행에 대한 대집행	동법 제9조
		바. 지하수 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동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사. 지하수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오염방지 명령	동법 제12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아. 지하수의 이용 실태조사 (단, 중앙행정기관에 보고는 제외)	동법 제15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자. 지하수 수질검사의 수리 및 시료채취 후 시료봉인·인계	동법 제16조,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제8조
		차. 지하수개발 이용자에 대한 보고, 자료제출 명령, 출입검사	동법 제17조
		카. 타인토지에의 출입허가, 일시사용 및 장애물제거 관련허가, 변경 제거시 손실보상	동법 제18조, 제19조
		타. 과태료 부과 징수, 의견진술기회 부여 및 이의신청 처리	동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17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수질관리과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먹는물 관리와 관련한 다음 사항</li> <li>가. 먹는물에 대한 수질검사</li> <li>나. 먹는물 공동시설의 지정·관리 및 필요조치</li> </ul>	<p>먹는물관리법 제5조 제2항</p> <p>동법 제7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p>

(별표1) 권한위임사무중 축산과 소관 제39호 이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축산과	39	○ 어선의 등록, 등록사항 변경 및 등록말소	어선법 제13조, 제17조, 제19조, 동법시행령 제4조, 동법시행규칙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2조, 제72조
	40	○ 어선건조. 개조의 발주허가 및 취소, 발주허가내용 통보, 건조·개조의 중지 및 어선·어선설비 제거 명령	동법 제8조, 제9조, 제10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1조
	41	○ 어선현장 확인업무	어선법 제11조
	42	○ 청문에 관한 권한	동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17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축산과	43	◦ 내수면어업 면허, 기간연장허가 및 시설제거 명령, 수면관리자와의 협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1조, 제27조, 제31조
	44	◦ 방치어선의 관리, 처분과 내용 공고, 제거명령 및 필요조치 (대집행)	어선법 제35조, 동법시행령 제15조
	45	◦ 과태료 부과·징수, 이의신청 처리	동법 제53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별표1) 권한위임사무중 경제과 소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경제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소매업 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시장개설허가 및 변경허가, 변경신고 수리</li> <li>나. 시장개설자에 대한 권고 및 조치명령</li> <li>다. 개업 등의 신고 수리</li> <li>라. 개설자 지위승계신고의 수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소매업진흥법제6조, 동법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6조, 제10조</li> <li>동법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li> <li>동법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li> <li>동법 제12조, 제13조</li> </ul>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경제과		마.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바. 과징금 처분 사. 청문 아. 보고명령 및 출입검사 자. 과태료 부과 징수, 이의신청 처리	동법 제14조 동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1조 동법 제45조 동법 제43조 제2항 동법 제51조

(별표1) 권한위임사무중 지역계획과 및 도시개발과 소관 사무를 삭제하고, 지역개발과 소관 사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지역개발과	1	○ 용도지역을 표시한 지형도면의 작성 및 승인신청·고시	국토이용관리법 제12조
	2	○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토지사용 권고	동법 제21조
	3	○ 국토이용관리법령 및 관계법령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의견진술 기회부여	동법 제26조
	4	○ 온천수 굴착, 동력장치설치 이용 허가	온천법 제5조, 제8조 제11조
	5	○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에 따른 의견협의	도시계획법 제83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 형질변경 준공검사</li> </ul>	<p>토지형질변경등행정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7조</p>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공업단지 지정권자인 도지사가 민간기업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의 다음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지방공단개발 실시계획(변경) 승인</li> <li>나. 개발실시계획(변경) 승인의 고시</li> <li>다. 개발실시계획(변경) 승인에 대한 협의</li> <li>라.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협의</li> <li>마.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한 협의</li> <li>바.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및 준공인가 처리를 위한 검사의뢰</li> <li>사.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공고 및 통지</li> <li>아. 개발사업의 준공인가전 사용허가</li> <li>자. 사업시행자의 감독조치, 의견진술 기회부여 및 처분고시</li> </ul> </li> </ul>	<p>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p> <p>동법 제19조의2</p> <p>동법 제21조</p> <p>동법 제26조</p> <p>동법 제27조</p> <p>동법 제37조</p> <p>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7조</p> <p>동법 제37조</p> <p>동법 제48조</p>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도시개발과	8	◦ 토지구획정리사업 시공감동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7조
	9	◦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	동법 제47조
	10	◦ 부담금 및 보조금의 집행잔액 사용 인가	동법 제76조의2 제2항
	11	◦ 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	도시재개발법 제10조, 제11조
	12	◦ 재개발사업 시행의 지도감독	도시개발법 제62조

(별표1) 권한위임사무중 치수과 소관 제87호 내지 95호를 삭제한다

(별표1) 권한위임사무중 교통행정과 소관 제18호 다음에 제19호 내지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교통행정과	19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 가. 건설기계조종사의 신고 수리	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p>나. 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 적성 검사 실시</p> <p>다. 건설기계조종사의 면허 발급</p> <p>라. 건설기계조종사의 면허증 재교부</p> <p>마.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대장 기재</p> <p>바. 건설기계조종사의 면허증 반납 처리</p> <p>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취소 및 정지처분</p>	<p>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p> <p>동법 제26조</p> <p>동법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 77조</p> <p>동법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78조</p> <p>동법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80조</p> <p>동법 제28조</p>
	20	<p>○ 건설기계등록의 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p> <p>가. 건설기계등록 및 등록증 교부</p> <p>나. 건설기계 등록증 재교부</p> <p>다.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처리</p> <p>라. 등록 이전신고 처리</p>	<p>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p> <p>동법시행규칙 제5조</p> <p>동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 7조</p> <p>동법시행령 제6조</p>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교통행정과		마. 건설기계 소재지 변동신고 처리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바. 등록의 개정 처리	동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8조
		사. 건설기계등록 말소 및 확인서 교부	동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아. 건설기계 등록원부의 비치관리 및 등초본의 교부와 열람신청의 처리	동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9조
		자. 등록번호표 봉인 등의 통지 및 명령	동법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차. 건설기계등록 번호표의 재부착	동법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카. 건설기계등록 번호표의 반납	동법 제9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
		타. 등록번호의 색김 명령	동법 제11조
		파. 등록번호표 봉인자지정 및 지정 사항의 변경신고 수리	동법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16조
	21	○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	동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39조, 제40조
	22	○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기관 지정	동법시행규칙 제74조
	23	○ 건설기계의 구조변경 승인	동법 제17조, 동법시행규칙 제41조
	24	○ 건설기계의 사용정지 처분, 화물 운송의 금지	동법 제33조, 제34조, 동법시령 제91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교통행정과	25	○ 보고 및 검사	건설기계관리법 제35조
	26	○ 의견진술 기회 부여	동법 제36조
	27	○ 과태료 부과·징수, 이의신청 처리	동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94조
	28	○ 건설기계 저당권 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  가. 건설기계 저당권의 등록  나. 저당권의 이전  다. 저당건설기계에 대한 압류등록의 촉탁처리  라. 저당권 등록의 개정	건설기계저당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2조  동법시행령 제4조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시행령 제7조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 신 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사 회 진 흥 과	1	새마을금고 분사 무소 설치승인	새마을금 고법시행 령제5조			(삭 제)	
청 소 년 과	1	청소년지도자 교육 실시	청소년육 성법 제 17조 및 동법시행 령제21조	청 소 년 과		(삭 제)	청 소 년 기 본 법 제 19 조 및 동 법 시 행 령 제 18 조
환 경 관 리 과	1	(생 략)		환 경 관 리 과	1	(현 행 과 같 음)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 지 등의 수용사용	폐기물관 리법 제 10조			(삭 제)	
	3	일반폐기물 처리업 의 허가 및 변경 허가 (수집운반업, 다량 배출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 처리업 포함)	동법 제 17조			(삭 제)	
	4	일반폐기물 처리업 의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수집운반업, 다량 배출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 처리업 포함)	동법 제 19조			(삭 제)	

현행				개정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 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 법령
환경 관리과	5	일반폐기물의 재활 용 신고	폐기물 관리법 제 44조 의2 제1 항			(삭제)	
	6	일반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동법 제 45조 제 1항	한 경 관리과		(삭제)	
	7	폐기물처리 조치명 령 불이행에 대한 대집행	동법 제 46조			(삭제)	
	8	일반폐기물 처리업 의 허가취소 및 영 업정지시의 청문 (수집운반업, 다량 배출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 처리업 포함)	동법 제 57조			(삭제)	
	9	과태료의 부과· 징수	동법 제 63조 제 2항			(삭제)	



현행				개정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환경 관리과				환경 관리과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음진동 배출 시설 규제에 대한 다음사항 (대기 또는 수질분야 1-2종 사업장 제외, 다만 대기1-2종 사업장중 아스콘제조시설 및 일반보일러 시설에 국한될 경우 위임범위에 포함)</li> </ul>	
	10	(생략)			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수리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	
	11	(생략)			나. 배출시설 설치기간 연장 신청의 수리	동법시행령 제2조 제4항	
	12	(생략)			다. 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 인정	동법 제10조	
	13	(생략)			라. 사업자의 권리·의무·승계 신고의 수리	동법 제10조의2	
	14	○ 공동방지 시설의 설치운영등	폐기물관리법 제12조		(삭제)		

현행				개정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환경 관리과	15	(생략)		환경 관리과		마. 공동방지사설 운영의 중단 또는 폐쇄신고 수리	소음진 동규제 법시행 규칙 제 16조 제 2항
	16	(생략)				바. 가동개시의 신 고 및 가동개시 일 변경신고의 수리	동법 제 13조 제 1항
	17	(생략)				사. 허가 또는 변 경허가 부합여 부 확인 및 조 치 명령	동법 제 13조 제 3항
	18	(생략)				아. 환경관리인의 임명 및 개입신 고의 수리	동법 제 21조
	19	◦ 토양정밀 조사	토양환 경보전 법제5조 제4항		3	◦ 토지정밀조사와 관련한 다음사항  가. 토양정밀조사 의 실시	토양환 경보전 법제5조 제4항
	20	◦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동법제 7조			나.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동법 제 7조
	21	◦ 타인토지에의 출입등	동법 제 8조			다. 타인토지에의 출입 및 장애물 의 변경제거	동법 제 8조

현행				개정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환경 관리과	22	○ 손실보상	토양환경보전법 제9조	환경 관리과	4	라. 손실보상	토양환경보전법 제9조
						마. 오염원인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동법 제 15조
	23	○ 토양오염 유발 시설의 신고등	동법 제 11조			○ 토양오염 유발 시설관련 다음 사항	
						가. 토양오염 유발 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동법 제 11조
	24	○ 토양오염유발 시설 설치자에 대한 명령	동법 제 12조			나. 토양오염유발 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시정등 조치명령 및 사용중지 명령	동법 제 12조
25	○ 출입검사 등	동법 제 13조	다. 토양오염유발 시설 설치자에 대한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 출입과 시설 및 비치자료의 검사	동법 제 13조			
26	○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동법 제 15조	(삭 제)				

현				개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환 경 관리과	27	○ 대책계획의 수립·시행	토양환경보전법 제18조	환 경 관리과	5	○ 토양보전대책 지역과 관련한 다음 사항  가. 대책계획의 수립·시행	토양환경보전법 제18조제1항																						
								28	○ 오염토양 개선	동법 제 19조	나. 오염토양 개선 사업 실시명령, 사업승인 및 변경승인, 사업 실시	동법 제 19조 제 1항, 제 2항, 제 3항																	
													29	○ 토지이용등의 제한	동법 제 20조	다. 토지이용 및 시설의 설치 제한	동법 제 20조												
																		30	○ 행위제한	동법 제 21조	라.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및 시설의 철거명령	동법 제 21조 제 3항							
																							31	○ 대집행	동법 제 24조	6	○ 명령불이행에 대한 대집행	동법 제 24조	
																													32
환 경 지도과	1 - 19	(생 략)  (신 설)	환 경 지도과	1 - 19	(현행과 같음)	20	○ 폐기물관리 관련 다음 사항																						

현행				개정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환경 지도과				환경 지도과		가.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변경 허가	폐기물 관리법 제26조
						나. 폐기물처리업 업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명령	동법 제 28조
						다. 과징금 부과· 징수	동법 제 29조
						라. 관계 행정기관 과의 협의	동법 제 31조 제 3항
						마.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동법 제 32조
						바. 휴업·폐업등의 신고수리	동법 제 42조
						사. 폐기물재생 처 리 신고수리	동법 제 44조의2
						아. 청문	동법 제 57조
						자. 과태료 부과· 징수	동법 제 63조 제 3항

현행				개정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 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 법령
보건 행정과	1 - 73	(생략)  (신설)		보건 행정과	1 - 73	(현행과 같음)	
					74	○ 사립결핵진료소, 요양 소의 설치허가 및 변 경허가	결핵예방법 제30조 제 2항 및 동 법시행령 제14조, 제 16조
수질 관리과		(신설)		수질 관리과	1	○ 지하수와 관련한 다음 사항  가.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한 지하수의 개 발·이용 및 보전· 관리의 조사 등  나.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다. 지하수개발·이용시 설의 시정명령 및 조치명령  라. 지하수개발·이용시 설의 폐쇄명령 및 당사자 의견진술 기 회 부여	지하수법 제5조 제2 항 내지 제 4항, 동법 시행령 제 제2조 제3 항, 제3조, 제4조  동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 제8조 제1항  동법 제8조 제2항, 동법 제20조

현행				개정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 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 법령
수질 관리과				수질 관리과		마. 지하수개발·이용지 역의 원상복구 또는 시설 철거명령 및 조치명령, 명령불이 행에 대한 대집행  바. 지하수 보전지역안 에서의 행위허가  사. 지하수오염을 방지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오염방지 명령  아.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 (단, 중앙행정 기관에 보고는 제외)  자. 지하수 수질검사의 수리 및 시료채취기 간 통보, 시료채취후 시료봉인 인계, 검사 의뢰  차. 지하수개발·이용자 에 대한 보고, 자료 제출명령, 출입검사	지하수법 제9조  동법 제11 조, 동법시 행령 제9조 제1항  동법 제12 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 항  동법 제15 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 항  동법 제16 조  동법 제17 조

현행				개정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 질 관리과		(신 설)		수 질 관리과		카. 타인토지에의 출입 허가, 일시사용 및 장 애물제거 관련허가, 변경제거시 손실보상  타. 과태료 부과·징수, 의 견진술 부여 및 이의 신청 처리  2. ◦ 먹는물 관리와 관련한 다음 사항  가. 먹는물에 대한 수질 검사  나. 먹는물 공동시설의 시정·관리 및 필요 조치	동법 제18 조, 제19조  동법 제24 조, 동법시 행령 제17 조  먹는물관 리법 제5 조 제2항,  동법 제7 조, 동법시 행규칙 제 2조
축산과	1 - 38	(생 략)		축산과	1 - 38	(현행과 같음)	
	39	◦ 어선의 등 록, 등록 사항변경 및 등록 취소	어선법 제9조, 제14조 제15조		39	어선의 등록, 등 록사항변경 및 등록말소	어선법 제 13조, 제17 조, 제19조 동법시행 령 제4조
	40	◦ 어선총톤 수 측정 및 개측	어선법 제13조			(삭 제)	



현행				개정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축산과	41	◦ 조업제한의 결정	어선법 시행령 제13조	축산과		(삭제)	
	42	◦ 호출부호 지정	어선법 시행규칙 제11조			(삭제)	
	43	◦ 어선원부의 등본, 사본과 열람 등	어선법 시행규칙 제23조			(삭제)	
	44	◦ 어선건조·개조의 발주 허가	동법 제5조		40	◦ 어선건조·개조의 발주허가 및 취소, 발주허가내용 통보, 건조·개조의 중지 및 어선·어선설비 제거명령	어선법 제8조, 제9조,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45	◦ 선박 국적증서 등의 검인	동법 제10조			(삭제)	
	46	◦ 지구별조합의 감독상 필요 자료 요구	수산업 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2조			(삭제)	
	47	◦ 수산시설의 사후관리 및 지도감독	수산시설관리 규정 제5조			(삭제)	

현행				개정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축산과	48	◦ 수산시설의 목적의사용,양도 교환,대여,담보 제공 및 주요 시설의 변경 승인		축산과		(삭 제)	
	49	◦ 수산동·식물 체포금지 해제 허가(양식어업, 제1종 공동어업 용 종묘)				(삭 제)	
	50	어선현장 확인 업무	어선법 제8조		41	◦ 어선현장 확인 업무	어선법 제11조
	51	항해의 신고	동법 시행령 제4조			(삭 제)	
	52	임시항해의 신고	동법 시행령 제30조			(삭 제)	
	53	청문에 관한 권한	동법 제 29조의2		42	◦ 청문에 관한 권한	동법 제 38조
	54	◦ 선박국적고시 등의 무효 고시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삭 제)	
	55	◦ 내수면어업 면허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43	◦ 내수면어업 면허 및 기간연장 허가 및 시설 제거명령, 수면관리자와의 협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제 11조

현 행				개 정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축산과	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자원보전지구에 관한 다음의 권한</li> <li>가. 수자원보전지구 관리</li> <li>나. 보전지구내 행위제한 위반사실 조사 및 위반자 조치</li> <li>다. 오염원조사 및 조치</li> <li>라. 오염사고발생시 환경오염도 조사</li> <li>마. 수산자원보전 사업 실시</li> <li>바. 표지판 설치</li> <li>사. 관리부 비치 및 보고</li> <li>아. 현지 지도·감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토이용 관리법 제14조의 2, 제26조</li> <li>동법 제 15조 제1항</li> <li>수자원보전지구관리요령 제6조</li> <li>동관리요령 제7조 제3항</li> <li>동관리요령 제8조</li> <li>동관리요령 제9조</li> <li>동관리요령 제10조</li> <li>동관리요령 제12조</li> </ul>			(삭 제)	

현행				개정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 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 법령
경제과	1	<p>○ 소매업진흥에 관한다음의 권한</p> <p>가. 시장의 개설 허가</p> <p>나. 대형점의 개 설허가</p> <p>다. 시장관리자의 지정</p> <p>라. 시장개설자에 대한 권고</p> <p>마. 개업등의 신 고</p> <p>바. 지위승계 및 사업의 양도 승인, 양수 신고</p> <p>사. 영업정지 및 허가의 취소</p> <p>아. 과징금 처분</p>	<p>도.소매 업진흥법 제6조</p> <p>동법 제 13조의2</p> <p>동법 제 7조</p> <p>동법 제 9조</p> <p>동법 제 10조</p> <p>동법 제 11조, 동 법시행령 제10조</p> <p>동법 제 12조</p> <p>동법 제 23조</p>	경제과	1	<p>○ 소매업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시장의 개설 허가 및 변 경허가, 변경 신고 수리</p> <p>(삭 제)</p> <p>(삭 제)</p> <p>나. 시장개설자 에 대한권고 및 조치명령</p> <p>다. 개업등의 신 고수리</p> <p>라. 개설자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p> <p>마. 영업정지 및 허가의 취소</p> <p>바. 과징금 처분</p>	<p>도.소매업 진흥법 제 6조</p> <p>동법 제11 조</p> <p>동법 제8 조, 동법시 행규칙 제 17조</p> <p>동법 제12 조, 제13조</p> <p>동법 제14 조</p> <p>동법 제15 조, 동법시 행령 제10 조, 제11조</p>

현				개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경제과		자. 청문	도.소매업 진흥법 제24조	경제과		사. 청문	도.소매업 진흥법 제 45조
		차. 보고	동법 제 25조 제1 항			아. 보고명령 및 출입검사	동법 제 43조 제2 항
		카. 과태료부과· 징수	동법 제 58조			자. 과태료 부과· 징수, 이의신청 처리	동법 제51 조
지 역 개발과		(신 설)		지 역 개발과	1	○ 용도지역을 표시 한 지형도면의 작성 및 승인신 청·고시	국토이용 관리법 제 12조
		(신 설)			2	○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 토지사용 권고	동법 제21 조
		(신 설)			3	○ 국토이용관리법 및 관계법령의 위 반자에 대한 처분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동법 제26 조
		(신 설)			4	○ 온천수 굴착, 동 력장치 이용허가	온천법 제 5조, 제8 조, 제11 조

현행				개정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 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 법령
지역 개발과		(신설)		지역 개발과	5	○ 용도폐지되는 공 공시설 및 토지등 의 무상귀속에 따 른 의견 협의	도시계획 법 제83조
		(신설)			6	○ 토지 형질변경 준공검사	토지형질 변경등행 정허가기 준등에관 한규칙 제 7조
		(신설)			7	○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공업단 지 지정권자인 도 지사가 민간기업 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의 다음 사무  가. 지방공단 개발 실시계획 (변경)승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18조 제 1항

현행				개정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 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 법령
지역 개발과				지역 개발과		나. 개발실시계획 (변경)승인 의 고시  다. 개발실시계획 (변경) 승인에 대한 협의  라. 공공시설의 귀 속 및 양도에 관한 협의  마.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 도에 관한 협의  바. 개발사업의 준 공인가 및 처리 를 위한 검사. 의뢰  사. 개발사업의 준 공인가 공고 및 통지  아. 개발사업의 준 공인가전 사용 허가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 조의2  동법 제21 조  동법 제26 조  동법 제27 조  동법 제37 조  동법 제37 조  동법 제37 조

현행				개정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지역개발과		(신설)		지역개발과		자. 사업시행자의 감독조치, 의견진술 기회부여 및 처분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신설)			8	토지구획정리사업 시공 감독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7조
		(신설)			9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따른 환지 계획 인가	동법 제47조
		(신설)			10	부담금 및 보조금의 집행잔액 사용 인가	동법 제76조의2 제2항
		(신설)			11	재개발사업 시행 자지정 신청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1조
		(신설)		12	재개발사업 시행의 지도.감독	도시개발법 제62조	
치수과	87	지하수개발, 이용의 신고처리	지하수법 제7조	치수과		(삭제)	
	88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시정명령등	동법 제8조			(삭제)	
	89	지하수개발, 이용지역의 원상 복구 명령	동법 제9조			(삭제)	



현행				개정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치수과	90	○ 지하수보전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동법 제 11조	치수과		(삭 제)	
	91	○ 지하수의 이용 실태조사 (단, 중앙행정기관 에보고는 제외)	동법 제 15조 제 2항			(삭 제)	
	92	○ 수질검사 등	동법 제 16조			(삭 제)	
	93	○ 지하수개발, 이용 자에대한 감독 및 검사 업무	동법 제 17조			(삭 제)	
	94	○ 타인토지에의 출 입 및 일시사용, 지장물제거 관련 허가등	동법 제 18조			(삭 제)	
	95	○ 과태료 부과.징수 등	동법 제 24조			(삭 제)	
교 통 행정과	1 - 18	(생 략)		교 통 행정과	1 - 18	(현행과 같음)	
		(신 설)				19	○ 건설기계조종 사 면허관리 에 관한 다음 사항



현행				개정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나. 건설기계 등록증 재교부  다.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처리  라. 등록 이전신고 처리  마. 건설기계 소재지 변동신고 처리  바. 등록의 개정 처리  사. 건설기계등록 말소 및 확인서 교부  아. 건설기계 등록원부의 비치 관리 및 등초본의 교부와 열람신청의 처리  자. 등록번호표 봉인등의 통지 및 명령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5조  동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 제7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동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8조  동법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동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9조  동법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현행				개정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교통 행정과				교통 행정과		차. 건설기계 등록번호 표의 재부착  카. 건설기계 등록번호 표의 반납  다. 등록번호의 새김 명령  파. 등록번호표 봉인자 지정 및 지정사항의 변경신고 수리	건설기계관 리법 제8조, 동법시행규 칙 제18조  동법 제9조, 동법시행규 칙 제19조  동법 제11조  동법 제8조, 동법시행규 칙 제15조, 제16조
		(신 설)			21	○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	동법 제16조, 동법시행규 칙 제39조, 제40조
		(신 설)			22	○ 소형 건설기계조종 교 육기관 지정	동법시행규 칙 제74조
		(신 설)			23	○ 건설기계의 구조변경 승인	동법 제17조, 동법시행규 칙 제41조
		(신 설)			24	○ 건설기계의 사용정지 처분, 화물운송의 금지	동법 제33조, 제34조, 동법시행령 제91조
	(신 설)			25	○ 보고 및 검사	동법 제35조	

현행				개정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 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 법령
교 통 행정과		(신 설)			26	○ 의견진술 기회 부여	건설기계관리 법 제36조
		(신 설)			27	○ 과태료 부과.징수 이의신청 처리	동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 94조
		(신 설)			28	○ 건설기계 저당권 관리 에 관한 사항  가. 건설기계 저당권의 등록  나. 저당권의 이전  다. 저당건설기계에 대 한 압류등록의 촉탁 처리  라. 저당권등록의 개정	건설기계저당 법 제5조, 동 법시행령 제 2조  동법시행령 제4조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시행령 제7조